

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2025. 3. 25.

운 영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486호로 2025년 3월 10일 이규선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결과보고서 제출 및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의원 연구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제3항)
- 나. 결과보고서 홈페이지 공개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제5항)
- 다. 조례 용어의 통일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 다. 입법예고: 생략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결과보고서·예산사용내역서의 제출 및 홈페이지 공개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함으로써 의원연구활동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의원연구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등의 제출)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시에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및 예산사용내역서도 함께 첨부하도록 의무화함. 제5항은 연구활동·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지체없이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 검토결과

- 2019년 7월 행정안전부에서는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의원정책개발비를 신설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 의무 등)제2항에서는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의원들의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가 제정(2019.10.17.)되었음.

- 한편,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

단체 기능·권한의 확대에 따라 부패 발생 가능성 증대

▲지방자치단체의 고질적 부패행위에 대한 근원적 진단·처방 요구

▲자치법규에 숨겨진 불패·불공정·규제를 유발하는 규정 개선의 사유로 61개 자치구(집행기관 및 지방의회)의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권고 사항을 공문(부패영향 분석과-4666)으로 보내왔음.

- 이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정책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사용내역서를 첨부하고, 해당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강행 규정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지방의원의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과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 자료

1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